

『서울희망고교장학금』 2019년 3분기 학교장 추천 장학생 선발공고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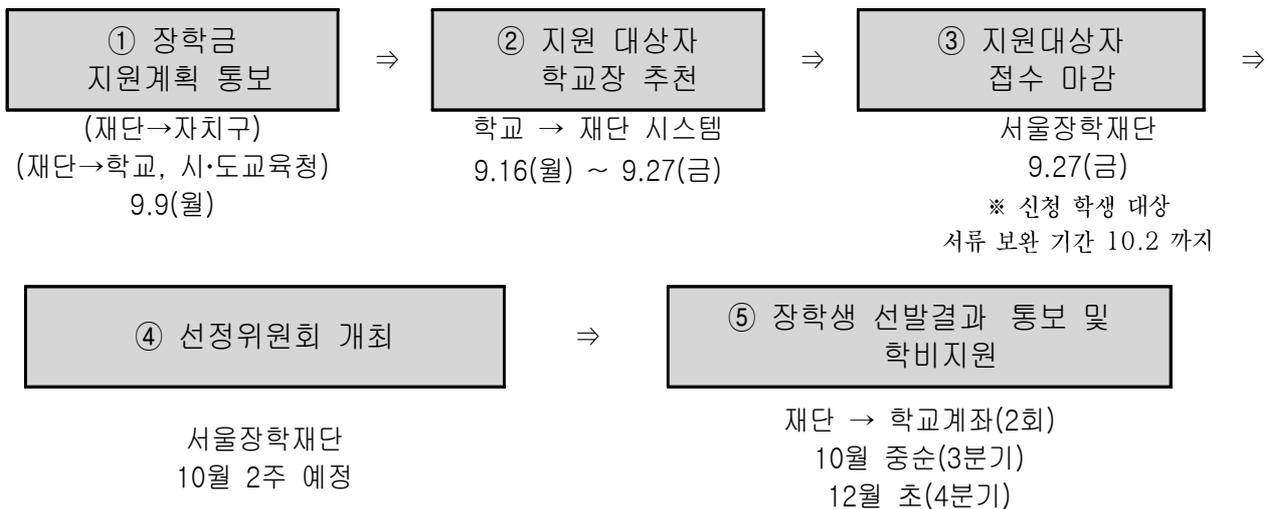
지원대상	지원성격	중복여부	지원기간	지원방법
저소득층 고등학생	학교별 수업료, 학교운영비 (분기별 최대 685,500원)	수업료, 학교운영비 중복 수혜 불가 (교육급여, 교육청학비지원, 기타 지자체 장학금 등)	2019년 3분기~4분기	학교장 추천

[중점 안내사항]

- ◇ 기존 서울희망고교장학금 장학생 선발 관련 소득실태조사 결과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의 차이로 인한 학비지원 사각지대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,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
- ◇ 지원대상 확대 : 서울소재 학교의 재학생 및 학생 또는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인 타지역 학교 소재의 재학생
- ◇ 지원액 : 수업료, 학교운영비(분기별 685,500원 이내 전액, 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, 부분지원 불가)
- ◇ 중위소득 80% 초과인 경제위기 가정의 학생도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 및 지원가능(탈락자 재추천 가능)
- ◇ 학교별 5명 이내 학교장 추천으로 장학금 지원
- ◇ 고교무상교육 대상학교 고3 학생은 장학금 신규 신청이 불가 하며, 1~2학년 신청 가능
(고교무상교육 제외학교 전학년 신청가능)
- ◇ '19년 1학기 서울희망고교장학금 신청자 중 합격자는 3~4분기 계속지급으로 신청할 필요 없음

□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서울희망고교장학금
2. 선발인원 : 약 1,630명 내외 (학교별 5명 이내 추천)
3. 지원금액 : 분기별 685,500원 이내 수업료, 학교운영비 전액(3~4분기)
4. 지원성격 : 수업료, 학교운영비 지원
5. 선발절차 및 업무 흐름도(일정)



※ 접수기한 내 신청자 대상 서류 보완 기간 : 9.28~10.2

□ 장학생 추천

1. 추천기간 : '19. 9. 16(월) ~ 9. 27(금) (2주간)

2. 선발대상

-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본인 및 보호자의 주소지가 서울이면서 타 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가정의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긴급히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(학교장 추천)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- 평생교육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는 학생
- 2019년 1~2분기 서울희망고교장학금 불합격자 중 가정경제위기 상황인 학생 신청 가능
※ 교육청 학비 지원 조사결과 및 이전 서울희망장학금 소득실태조사 결과가 중위소득 80%이상인 가정도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긴급히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지원 가능

3. 선발제외자

- 2019년 서울희망고교장학금으로 이미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('19년 1학기 서울희망고교장학금 신청자 중 합격한 학생)
- 소득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
-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
- '19년 2학기 고교무상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학생
- 교육청 학비지원 등 타기관을 통해 이미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, 받기로 예정된 학생 (단, 각종대회 입상자의 포상금 등은 예외)

4. 선정방식

- 예산 범위 내 학교별 5명 선발(서울 외 지역 학교 동일)
- 장학금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별 기본 4명 선발 후(다자녀>한부모여부>고학년) 1,2분기 서울희망고교장학금 추천 시 배정인원이 많은 학교(학교별 저소득층 비율 산정)순부터 우선 선발
※ 1,2분기 학교별 배정인원이 같은 학교인 경우 신청 학생별 가구원 자녀수 순 > 한부모, 조손가정 순 > 고학년 순 > 장학생선정위원회 선발 순으로 선발 예정

□ 장학금 지급

1. 지원기간 : 2019년 3분기 ~ 4분기 까지
2. 지급일정 : 10월 중순(3분기), 12월 초(4분기)
3. 지급방법 : 해당학교 계정으로 직접 입금

□ 장학금 반납

1. 환수대상 및 환수방법

- 장학생 선발일 이후 이중수혜, 자퇴, 전학 등 환수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조치 철저

사유 구분		반납금액	비고	
자퇴		자퇴원 제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납	자퇴원 첨부	학비 일부만 지원
전학	서울시내 전학	일할계산하여 반납 ※ 공립→ 사립 전학 및 시도 간 전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 처리	서울시내 - 재단에서 전입학교에 계속 지급(학교 간 정산 금지)	되는 학교는 서울희망장학금 우선처리 후 잔액 발생 시 반납
	서울시외 전학		서울시외 - 학부모 및 학생 주소지 확인 후 계속 지급	
중복수혜	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선정	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분기로부터 반납	반납 사유 작성 시 수급자, 한부모 선정 및 교육급여, 교육청학비지원으로 인한 중복수혜를 명확히 기재	
	교육급여			
	교육청학비지원사업			
기타 결격사유 발견 시				

- 붙임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고, 반납금은 환수계좌에 입금 조치
- 환수계좌 : 우리은행 1005-501-406536(예금주 :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)

□ 행정사항

1. 학교장

- 『서울희망고교장학금』 선발 절차에 따라 대상자 추천 입력(입력 후 장학담당교사 총괄 확인 필수)
 - 장학생 선발시스템(www.hissf.or.kr)에 입력
 - 학교별 5명 이내 추천
 - 각 학교별 ID,비밀번호 배정(1,2분기 선발 시 안내), (문의 070-8667-3512)
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확인
 -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학교장 추천서 교내 보관
- '19년 1~2분기 합격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(신규 지원자 추천)
- '19년 1~2분기 탈락자 중 가정 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도 학교장 추천으로 신청 가능
 - 홈페이지 관리자모드 추천 시 '19년도 1학기 서울희망고교장학금 탈락한 학생 명단 게시
 - '19년도 1학기 서울희망고교장학금 탈락한 학생 추천 시 신규등록이 아닌 추천 학생 명단에 재신청 버튼 클릭(관련 신청서는 신규로 작성하여 학교 보관)
- 장학금 입금 계좌 변경 시 서울장학재단으로 공문 발송 요청

2. 자치구

- 학교장 추천 지원계획 알림(재단→자치구)
- 서울희망고교장학금 3분기 학교장 추천 문의 시 서울장학재단 안내

□ 신청문의

1. 담당자 연락처 : E-mail : dk248@hissf.or.kr 직통전화 : 070-8667-3512

2. 시스템 사용 방법 : 붙임의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

※ 반드시 장학담당 선생님께 학교 *ID와 패스워드*(학교별 기 배정) *시스템 사용매뉴얼(붙임)*을 부여받아 사용 바랍니다.